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5. 25 선고 2018가단54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소외 A(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한 2017. 7. 4.자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7. 4.자 접수 제1451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A와 그 부친인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다1).

나. A는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 7. 4.경 적극재산이 1억 8천여만 원이나, 소극재산이 5억 원을 상회하여 무자력이었다.

다. A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7552).[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친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는 그 당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을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A와 피고의 관계, A의 자력, 증여계약일과 등기일이 동일한 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